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 사 건 명 15-직권-00006 개인정보 게시로 인한 인권침해  
피 해 자 2015년 ○○중학교 재학생 일부  
피 조사 자 1. ○○○(○○중학교 교사, 2015학년도 인성인권부장)  
2. ○○○(위 학교 교사, 2015학년도 ○학년 ○반 담임)  
3. ○○○(위 학교 교사, 2015학년도 ○학년 ○반 담임)  
4. ○○○(위 학교 교사, 2015학년도 ○학년 ○반 담임)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조사자 1., 2., 3.은 학생들의 상벌점 현황을 교실 등에 게시하여 피해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조사자 1., 2., 3.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조사자 4.는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거부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50조에 규정된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조사자 4.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다. 위 가.항과 나.항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

서 학생들의 상별점 내역이나 시험 성적 등 개인정보 관리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내 및 교육 강화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한다.

## 2. ○○중학교장에게,

학생의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것은, 교직원들이 개인정보에 대하여 인권감수성이 낮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교직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인권교육 포함)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I. 직권조사 개요

### 1. 직권조사 실시 배경과 목적

2015. 9. 3.(목),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학생인권교육센터”라 한다) 홈페이지에, ‘○○중학교에서 각 학급의 교실 게시판에 학생들의 별점상황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증거사진 첨부됨)이 접수되었다. 위 민원을 기초조사한 결과, 그 내용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해학생들이 다수이며, 인권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로 직권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결정하였다.

### 2. 조사 방법 및 경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5. 9. 3.(목) 직권조사를 위해 기초조사(민원인 상담 등)를 실시하고, 같은 달 17.(목) 직권조사 할 것을 결정한 후, 같은 해 10. 1.(목), 2.(금)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관련자 문답 등을 실시하였다.

## II.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 1.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 가. 피조사자 1.의 주장

1) 인성인권부장으로서는 상벌점제 운영 등 학생생활교육과 관련된 일을 총괄하고 있으며, 학생별 상벌점 현황은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각 담임교사들과 공유하고 있다.

2) 인성인권부 차원에서 각 담임교사들과 상벌점 현황 게시에 대해 약속한 바 없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지시한 사항도 없다.

3) 20점 이상 벌점 누적 학생들에 대해 별도로 지도(벌점상쇄 계획 수립 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해당 학생들의 벌점현황을 교내 엘리베이터 및 구름다리(급식실 이동통로) 앞에 게시하였고, 게시 대상 학생들의 명단을 직접 작성·게시하였다.

4) 학생지도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왔고, 위와 같은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앞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 하였다.

5)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공포,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설,

인권옹호관의 활동 등에 대해 듣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교육이나 연수 기회가 적어 인권감수성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 나. 피조사자 2.의 주장

인성인권부 교사를 통해 학생인권 관련 내용을 연수받았고, 평소 상별점 현황을 문의하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상별점 현황을 안내한 적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학생들의 상별점 현황을 게시한 적은 없다.

#### 다. 피조사자 3.의 주장

1) 신규교사연수 및 교무회의 시간 등을 통해, 학생인권 에 관한 내용을 전달 받았다.

2) 학생들의 문의가 있을 때 상별점 현황을 개인별로 안내하였는데, 2015년 4월쯤, 별점이 많은 학생들이 분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학급게시판에 상별점 상황을 1회 게시하였고, 그 기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상별점 현황을 게시한 이유는, 다수의 학생들이 여러 번 찾아와 문의할 때마다 알려주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학생들 간에 별점을 받지 않도록 상호 협력했으면 하는 교육적 차원의 고려도 있었다.

4) 상별점 현황을 게시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향후,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더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

#### 라. 피조사자 4.의 주장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권조사하고 있는 건은 '상별점 현황 게시'에 관한 것이므로, 본인이 학생들의 성적을 게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다고 생각되어 답변하지 않겠다.

## 마. 학생들에 대한 집단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 1) 1, 2, 3학년 각 반 실장 11명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가) 2015. 1학기 경, ○학년 ○반 학생들의 요청으로 학급 게시판에 상벌점 현황이 게시되었는데, 누가 게시했는지, 게시기간이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위 1학기 중간고사 이후 경, 담임선생님(피조사자 2.)이 ‘보고 반성하라’는 차원에서 게시하였다.

나) 2015. 1학기 경, ○학년 ○반 학급 게시판에 상벌점 현황이 게시되었는데, 누가 게시했는지, 게시기간이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 2학년 중 벌점이 20점 이상 누적된 학생들의 상벌점 현황이, 2학년 교실층의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되었고, 3학년 학생들의 상벌점 현황도 급식실 이동통로인 ‘구름다리’에 게시된 적이 있다.

### 2) ○학년 ○반(응답자 32명), ○학년 ○반(응답자 27명) 설문결과

#### 가) ○학년 ○반 설문결과

(1) 학급 학생들이 상벌점 현황을 담임선생님께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담임선생님이 상벌점 현황을 게시하였다.

(2) 담임선생님이 상벌점 현황을 게시한 이유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찾아와 물으니 일일이 답변하기 어려워서라고 생각한다.

(3) 친구들이 서로 누가 상벌 점수가 많고 적은지 이야기하고, 벌점이 많은 친구를 놀리기도 하였다.

(4) 담임선생님이 각자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시며, 상벌점 현황을 인쇄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5)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게시판에 상벌점 현황이 게시되었

고, 누적 별점이 많아서 부끄러웠다.

(6) 상별점 현황을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친구들도 많은 만큼,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7) 상별점 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면 좋겠다.

나) ○학년 ○반 설문결과

(1) '별점을 보고 더 분발하고, 상점을 더 받으라'는 의미로 상별점 상황을 게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2) 상별점 현황을 누가 게시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학생들 사이에서 별점이 많은 친구에게는 "역시 너"라고 비꼬기도 했고, 상점 받은 친구에게는 "뭐 해서 받았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3) 1학기 초 경, 담임선생님이 게시판에 게시한 것 같다.

(4) 개인의 상별점 현황이 반 전체에 공개되니까 불편했다. 다른 친구들의 반응도 썩 좋지 않았다.

### 3. 인정사실 및 판단

#### 가. 인정사실

피조사자의 문답서, 피해자들의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5. 1학기 경, 피조사자 1.은 별점이 20점 이상 누적된 2·3학년 학생들의 별점현황을, 교내 엘리베이터 및 구름다리 앞 두 곳에 1회 게시하였다.

2) 피조사자 2.는, '2015. 1학기 경,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년 ○반 학급 게시판에 학생들의 상별점 현황을 게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피조사자 2.가 상별점 현황을 게시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있다.

3) 피조사자 3.은 2015. 4.경,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년 ○반 학급 게시판에, 학생들의 상별점 현황을 1회 게시하였다.

4) 2015. 10. 2. 13:50경, ○○중학교 소회의실에서 피조사자 4.는, 위 학교 ○학년 ○반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을 게시하였다는 사안에 대한 문답 과정에서, 해당 직권조사 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였다.

5) 피조사자 4.가 ‘모의고사 성적 게시’를 하였다는 사안은, 학생들과의 집단면담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성적을 게시한 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년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학교 측의 협조를 받지 못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 나. 판단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의 상별점 현황 및 성적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러한 개인정보가 해당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해당 학생은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1) 상별점 현황 게시 관련

위 인정사실 1)항과 같은 피조사자 1.의 행위는, 학교에서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개인의 별점을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으로, 해당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 2)항과 같이 피조사자 2.의 주장과 해당 학생들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나, 학생들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아무리 인권침해이지만, 사소한 거 가지고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내 별점을 보고 놀린다.”, “친구들이 나는 상점이 많고 별점이 많고 하는 반응이었다.”, “어느 순간 걸려 있었다. 남자 애들이 별점 맞은 애들을 놀렸다.”, “별점이 많은 다른 친구의 이름과 별점 몇 점인지를 애들한테 말하고 다녔다.”, “학생들이 상별점을 알려달라고 선생님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게시를 했다.”는 등의 주장이 있고, 위와 같은 학생들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조사자 2.의 주장보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조사자 2.가 2015. 1학기 경, ○○중학교 ○학년 ○반 학급게시판에 학급 학생들의 상별점 내역을 게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피조사자 2.는, 학교에서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개인의 별점을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으므로, 해당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은 피조사자 3.의 행위는, 학교에서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개인의 별점을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으로, 해당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

리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조사자들이 위와 같이 한 것이, 비록 생활지도 차원에서 별점 누적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는 등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학생들에 대한 생활교육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에도, 상별점 현황을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조사자들의 행위는,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조사자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필요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므로, 교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조사거부 관련

피조사자 4.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는 ‘상별점 현황 게시’에 관한 것이고, 본인에 대한 사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집단면담 과정에서 나온 학생들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당시 위와 같은 피조사자 4.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피조사자 4.가 성적을 게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여,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2016. 2. 당시 3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하였으므로, 추가 조사를 하기도 어렵다)

조례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위 학교에서 발생한 “상벌점 현황 게시”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모의고사 성적 게시”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였는 바, 해당 사안은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 4)항과 같은 피조사자 4.의 행위는, 조례 제 5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문제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조사자 4.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권고하여, 이를 통해 다른 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Ⅲ.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1.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임 송 (서명)

[별지 : 관련 규정]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②(생략)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